윤리규정

제정일자 : 2001. 3. 1. 개정일자 : 2014. 6. 23. 주관부서 : 윤리경영실

코웨이는 고객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기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윤리경영에 바탕을 둔 'Clean-Coway' 문화를 확립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써 본 윤리규정을 실천한다.

1. 총칙

1.1 목적

본 규정은 윤리헌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코웨이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규범을 정하고 윤리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 차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규정은 코웨이의 모든 임직원, 동반자, 각종 거래 관계를 갖는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윤리경영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 관련 규정에 정한 사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1.3 조직

1.3.1. 본 규정의 담당 조직은 윤리경영실로 한다.

1.3.2. 본 규정의 지원 조직은 인사, 영업, 구매, 마케팅, 생산, 기술 관련 본부로 한다.

2. 클린코웨이 윤리문화

2.1. 고객에 대한 윤리

- 2.1.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느다
- 2.1.2.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 2.1.3. 고객에 대한 정보와 자산은 고객의 승인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

2.2.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 2.2.1. 코웨이의 유무형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전한다.
- 2.2.2. 코웨이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면서 주주 및 투자 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는 금지한다.

2.3. 동반자에 대한 윤리

- 2.3.1. 코웨이는 자유시장경제 안에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습을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지키며 공정한 경쟁 속에서 정당한 우위를 이룩한다.
- 2.3.2. 자격을 구비한 모든 동반자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의 참여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모든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 2.3.3.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으며, 거래선 선정에 특수관계자(즉,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친구, 학연 및 지연에 의한 관계자, 근무경력자 등)를 객관적인 검증절차(즉, 입찰, 비교견적 등)없이 거래처로 선정하지 않는다.
- 2.3.4. 동반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은 상호 공유한다.
- 2.3.5. 코웨이는 동반자와 상호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동반자는 선관주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2.4. 임직원의 윤리

- 2.4.1. 세계일류의 환경기업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충실한 태도를 유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모든 일을 추진한다.
- 2.4.2. 임직원은 상호간에 마음을 전하는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발전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직무를 완수한다.
- 2.4.3. 코웨이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 경영정신을 공감하고, 코웨이의 방침 및 제반 법규에 따라 각자의 직무를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 2.4.4.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개방적 사고를 통한 적극적 도전으로 창의적인 인재상이 되도록 스스로 개발한다.
- 2.4.5. 임직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적 지위, 경제적 능력, 신체, 학연, 혈연, 지연과 관련된 이유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한다.
- 2.4.6.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개인적인 이익도 취득하지 않는다.
- 2.4.7. 임직원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내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 2.4.8. 공정한 업무집행을 내부에서 실현하고, 임직원 개인 및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조직활성화 및 경조사와 같은 예외사항에 관하여는 윤리실천지침에 의한다.
- 2.4.9. 코웨이의 정보 및 자산은 모두 영업비밀로 보안등급에 따라 관리되고, 사전 승인없는 외부 유출은 절대 허가되지 않으며, 임직원은 거래 관계에서 코웨이의 정보가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준수한다.
- 2.4.10.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노동의욕 상실 및 업무생산성 저하, 회사의 이미지 손상 및 법적분쟁, 사회적 해악 등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므로 철저히 예방관리를 하도록 한다.
- 2.4.1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발견하는 즉시 보고조치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5. 사회에 대한 윤리

환경과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환경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합리적인 사업을 통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사용 확대를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이로써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3. 윤리문화 운영

3.1. 윤리규범 위반의 신고

- 3.1.1.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부터 그러한 사항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담당 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 3.1.2. 회사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직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3.1.3. 제보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 3.1.4. 기타 제보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보자보호 및 포상지침에 따른다.

3.2.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한 처리

- 3.2.1. 담당 조직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윤리규범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관련 서류,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련된 지원 조직에 즉시 통보한다.
- 3.2.2. 지원 조직은 통보 받은 사항에 관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본부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3.2.3. 연루된 동반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반자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조치를 의뢰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동반자 또는 그 임직원 에 대해서 변상 조치를 한다.
- 3.2.4. 담당 조직은 관계법령의 위반자에 대해서 법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3. 윤리실천지침

- 3.3.1. 담당 조직은 임직원들이 윤리규정을 보다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윤리실천지침을 마련한다
- 3.3.2. 지원 조직은 담당 직무 및 본부에 적합한 세부적인 본부윤리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3.4. 해석기준

코웨이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범, 윤리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규칙,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3.5.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 관련 규범들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칙

1. 시행시기

- 1.1. 본 윤리규범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본 윤리규범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윤리규범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4. 본 윤리규범은 2013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